

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
(의안번호 제91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7      송정현 의원 외 5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18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5. 25     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 법규인 고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례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(안 제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 제2항이 법률 제736호에 의거 개정 삭제되어 상위 법규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5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